



# 獨立紀念館建立에

## 즈음하여

崔 昌 奎 — 신진건축

假稱 〈獨立紀念館〉이 건립되어야 한다든가 또는 대지나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이미 시간적으로 늦은 것 같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專門分野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建築士協會誌에 많은 회원들의 投稿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의 지적에 대해서 發注側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이 묵묵히 강력한 추진력을 과시하면서 位置·垆地規模 등을 선정하였고, 建築家 몇명을 발주측이 선정하여 企劃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기획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年初 그들은 외국시찰을 떠났다.

그동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들 建築委員 5명으로 하여금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개 현상설계의 참가나 응모요령의 根幹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土木分野에서는 진입로 등 全体垆地使用計劃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一段落을 지으면 공청회를 열어 그 案을 수정해서 2 단계 설계경기에 붙일 것이라고 듣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獨立紀念館 건립의 동기가 취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일이 우리 歷史上 일찌기 없었던 의미와 규모를 가졌기에 어떤 내용의 것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발주측으로 간주되는 推進委員會가 한번쯤 그 腹案을 세상에 발표할 필요가 있음직 한데, 그리고 全体國民의 소리를 들어보지도 한데 명분도 없는 86년이다 88년이다 라는 막연한 시간부의 竣工目標를 세우고 案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 명분상의 공청회를 갖는다 함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공청회가 아닌 報告會가 되어버릴 공산이 큰 것으로 느껴진다.

### □ 全國民의 소리 들어보아야

建築委員들은 외국시찰에서 돌아와 見學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의 용도구분이나 건물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어떤 基本案을 작성하여 공청회에 내놓는다고 한다. 장기간 동안 推進委와의 협의 끝에 專門家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基本案일텐데, 공청회에서 그 내막이나 추진된 경위내용도 모르고 어떤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要式行爲 밖에 되지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도대체 一般公開設計競技란 말은 제한이 이미 규정된 것의 범위 내에서만의 것을 창작해 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즉 진입로 결정도 되고 용도구역, 요구되는 면적이나 위치, 또 주위가 요구하는 부대적인 내용이 결정되어 이것이 응모요령에 제시된다면, 응모자는 오직 造型만에 대한 창작만을 하라는 것인지. 다시 말해 大部의 골격은 이미 다 된 부분의 설계경기 밖에는 되지않는 격이 되는 셈인데, 과연 설계경기란 그런 것일까?

우리는 국제설계경기나 국내의 현상설계경기를 많이 치룬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어떤 불평이나 물의가 일어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이 엄하다고 해서 반드시 범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계경기의 불평이나 물의 또한 인간이 하는 일이기엔 근절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우린 우리들의 惠知로서 최대한 公正에 가장 가까운 과정과 수단

을 다해 보자는 데에 그 뜻이 있음은 물론이며 설계경기의 생명이 공정에 있다는 것은 분명함으로 全手段을 총동원해야 할 의무같은 것이 있다고 본다.

물론 한 건물을 많은 건축가들의 작품 속에서 선출해 낸다는,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경쟁 속에서 걸작을 선출하려는 데에 있으나, 그 과정이나 수단이 정의롭거나 공정치 못할 때 설계경기에 까지 붙었던 의미가 상실되고 마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의 있는 공정한 과정과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좋은 作品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 되며, 바로 이러한 不協和音이 후에 불평이나 물의의 素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의롭고 성실한 과정과 수단이란 어떤것일까? 그것은 너무나 많은 항목을 열거할 수 있겠으나 현재 UIA가 집행하고 있는 국제현상설계경기규칙과 우리 건축3단체가 特別機構로 구성하고 있는 한국건축현상설계경기규정에 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 이 가운데 UIA의 규정은 아직 우리 국내사정에 비추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규정만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 현상설계경기규정 따라야

여기에서 우리의 규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建築士誌 82년 12월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의견을 발표한 바 있지만, 건축 非專門分野의 인사들로 구성된 推進委의 腹案이나 기획은 설계경기 응모요령의 내역에

제시될 문제들의 한계를 넘어서 垆地의 사용기획과 平·立面은 물론 조형 등에 대해 결정·제안을 하는 데까지 미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독립의 정의나 투쟁의 對象國, 史料의 量 및 진열, 상징의 대상 등을 정립해서 응모요령에 제시한다면 응모자는 자기의 전문지식으로서 이를 소화하고 그의 最大公約數를 摘出해서 창작해 낸 것을 선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공평하고 성실한 과정을 거쳐 제출된 많은 응모작품 중에서 1점을 선출해 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우기 건축전문 심사원들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 설계경기의 精神마저 불투명해지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설계경기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잡음과 불의를 빚어 내는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면

- ① 콤포에다 기대했던 目的結果나 응모자의 創作意慾 결과가 불일치했을 때
- ② 發注側의 경기운영 방침의 결함이나 심사원의 능력·방법의 결함
- ③ 擬似콤포 또는 전문심사원의 채택에 대한 발주측의 개입 및 편견이나 무시 등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①의 경우는, 우수작품의 선출기준이 建築의 本質에서 명확히 규정지을 수 없다는 데서 야기된다고 보면 각기의 건축에 대한 비판수준이나 능력의 차이가 빚어 내는 문제가 되고 만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建築評論이라는 전문적인 분야가 不在한 탓도 있겠으나 각자(전문가든 비전문가든)의 自己主觀에서 나타난 감정이나 견해가 모여져서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해결의 방안이 거의 없다. 또한 건축의 전문적인 이론이나 사상, 작가의 개성이나 位相의 건축의 본질 및 일반 대중의 건축에 대한 理解度의 차이 등을 定型化 내지 均一化 시킬 수 없다는, 즉 건축이 형이상학이라는 데서 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논리나 상식으로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建築自體의 추상적 의미나 가치가 현사회 상황 속에서 괴리되어 있다는 데에 더욱더 먼 거리가 있는 것이다.

□ 부당한 개입·편견등 불식 필요

이때 심사원들의 판단이 성실·공정했다면 마땅히 승복해야 한다. 문제는 설계경기가 일종의 競技라는 점에서 주최가 누구든 간에 승패가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더우기 그 경기가 사회에 공고된 公約이므로 분명한 판결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에서는 가끔 당선작이 없는 판결을 볼 수 있다.

심판이란 시합의 拙劣如否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시합운영의 공정과 승부를 판결하는 것이며, 따라서 自己分野의 능력이나 외국의 능력수준을 운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②의 경우, 發注者(官·公人·個人)는 대개가 비전문가이며 막연히 적은 자금과 좋고 훌륭한 건물을 얻어야겠다는 욕망을 갖고 있다.

심사원의 능력과 방법의 결함이라는 것도 비전문인의 독선에 의한 각종 규정을 무시한 데에서 기인하는 바 이것은 우리만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우리 建築界는 한국건축설계경기 운영위라는 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경기를 발주하려는 발주자가 지금까지 이 기구에 문의나 협조의뢰를 해온 예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발주자들이 얼마나 獨尊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기구가 무보수로 자문·협조하겠다는 데도 말이다.

여기에서 절절하고 싶은 말은 외국의 심사원에 대한 문제인데, 공고된 건물의 성격이나 국가체면, 과다경비 지출 등의 이유를 들어 이때까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설계경기의 궁극적 목표는 좋은 건물을 민주적으로 선택해 내는 데에 있다. 따라서 모든 力量과 방법을 초점으로 맞추어 놓고 公正에로의 지혜를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二意的이고 枝葉的인 사향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는 작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②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외국인 심사원이 참가하는 것을 主張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經驗으로 볼

때 우리의 전문 심사원들의 公正性을 유도한다는 방편으로도 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전문심사원들의 건축심사수준이나 능력을 기대하고, 우리 심사원들의 수준과 능력과의 비교 내지 不信의 素地를 制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경기운영 방법이나 심사방법 등은 경기운영위의 규정에 상세하게 제시되겠지만 심사방법은 응모가능한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심사규정을 그때그때 정하고 규정에서 이탈하지 않는 심사집행을 한다면 ②항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고 본다.

③항의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 國內設計競技에서만은 유사한 콤포를 보아 왔다. 이는 발주자의 불성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기선전이나 명분을 위해 사전에 특정한 건축가와 內約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취하는 식의 2종류와 이유는 다양하다. 이런 일은 法的으로 막아야 마땅하고, 우리가 잊어서 안될 일은 이런 일을 하는 저변심리에는 이 사회의 건축가들을 한낱 장삿꾼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 公正性 유도위해 外國심사원 필요

이런 일의 발주측이 관공서일 경우는 특정의 건축가에게 설계를 위촉하고 감사대비책으로 형식만 취하는 예가 있겠고 이러한 콤포일수록 속사정이 어두운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또 안타까운 일은 전문심사원의 소신있는 선택에 대한 개입으로 간섭, 무시 등은 우리사회의 상식화된 風俗圖라고나 할까...

가까운 예로서 올림픽조직위원회건물설계경기의 결과를 들 수 있겠다. 전문심사원이 뽑은 당선작을 거부하고 해당작 없음으로 발표, 재출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발주측의 마음에 안들어 심사원들의 심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나 일반대중이나 건축계로서도 공식적으로 一言半句 항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심사원들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건축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심사원들이 갖는 권

리나 의무같은 것이 이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UIA 규정을 보면 심사원은 그 분야의 지식이나 능력, 실제체험이 풍부한 자로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여기서 高邁한 人格을 자격조건에 넣고 있음은 심사원으로서 성실·공정해야 하고 권리나 의무를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심사가 끝나고 당선작을 선출해서 발주측에 통고한 후 심사료나 반환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장이름으로 公表하고 발주자의 당선작에 대한 사후처리도 주시해야 할 도의적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발주처의 중속된 머슴처럼 항변도 못하고 관망하는 것이 常例인 것이다. 바라기는 건축블도, 건축절대본권이라는 여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됨이나 인쇄, 적응이나 동조만이 능사가 아니며 제안·질문·거부의 권리라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끝으로 法이나 規定 앞에 특별이라는 단어만 달면 만사형통인 풍토 속에서 우려되는 점은 턴키베이스라는 것으로, 앞서의 實例도 어떤 대형건설업체가 턴키베이스로 덤벼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러할 때 응모희망자들은 그 설계경기가 前記 ③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응모의욕이 사그러 들어 설계경기의 의미·정신·취지를 무엇으로 읽어 내려가야 하는가?

무릇 “건축이란 그 사회상황 속에서 生成되는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는 先人들의 말뜻을 알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그 정도 수준의 건축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발주처는 과대망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편 독립기념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평소 이름난 저명한 건축가들의 제안이나 발언이 없음을 무슨 까닭이고 건축3 단체가 건축계의 종합된 의견이나 질문·발언이 없음을 왜까? 표현은 안하지만 만일 당선이 된다면 그 명예와 利權이 막대한 데도 왜 침묵만 지키는 것일까?

마땅히 건축계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 문제를 주제로 공청회나 심포지움 등을 열어 종합된 건설적인 의견을 요약해서 추진위측에 건의할 필요는 없는지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믿는다.

#### □ 건축계 종합의견 반영필요

추후 推進委가 공청회에 제시할 마스터플랜은 역사가·토목·조각·건축 등 각 분야에서 작성한 안으로 믿어지지만, 명칭·독립의 정의·상징이나 기념성의 대상·전시할 史料의 量과 質·부대시설의 종류나 규모·전체대지이용계획·장래에 대한 계획 등 推進委 중에서 專門分委가 정해서 제시될 것이지만, 과연 이런 일들을 추진위가 단독으로 결정할 성질의 것인가도 의문이 된다.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추진위의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한 바에는 추진위는 案을 作成하기 전에 전체국민에게 물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이미 선정된 대지만 해도 어찌서 그곳을 선정했다든지, 선정의 경위나 여건을 국민앞에 설명할 처지가 못되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推進委가 건축주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많은 아동들까지도 배저저금통을 깨뜨려 현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있는 것인지?

이제 사후의 일이 되겠지만 설계경기도 끝나고 당선작도 나온 다음에도 할일은 많을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심사원 전원의 심사평도 공개되어야 하고 출품된 모든 출품작품이 공개전시되어야 하며 낙선된 작품은 모두 반환되어야 하겠다. 욕심을 낸다면 심사원 각자의 심사채점표도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는 응모자나 국민이 심사의 공정 여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발주측은 공정한 경기관리를 했다는 증거도 되겠고 심사원도 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物證이나 報告도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국제설계경기에서는 당연지사라 되어 있지만 우리 국내경기에서는 몇건의 先例를 가지고 있으므로 有終의 美를 거두는 作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두서없이 의견·질문·건의·제안을 써보았을 뿐이나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 견해를 밝혀 두고 건축분야에서도 많은 發言이 나와 그 發言을 종합해서 推進委에 건의하는 것이 이 時点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

### ● 建築相談案内 ●

본회에서는 市民들의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 無料建築相談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설계 및 시공·관계법규 등 건축과 관계되는 사항)

□ 월~금요일 / 오후 1시~오후 3시까지

□ 서울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1층 / 722-7653 · 7685